(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金信祐 議事日程 第1項을 上程하기 전에 成員이 11名으로 增員되었으므로 訂正 報告합니다.

1. 釜山直轄市沙下區條例等의名稱變更을위한條例案(沙下區廳長提出)

(14時49分)

○委員長 金信祐 議事日程 第1項 釜山直轄市沙下區條例等의名稱變更을위한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條例案에 對하여 企劃監査室長으로부터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成鍾珹 企劃監査室長 成鍾珹입니다.

평소 尊敬하는 金信祐 總務社會產業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沙下區條例等의名稱變更을위한條例의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本 條例를 制定하게 된 理由는 1994年12月2日 國會에서 議決된 地方自治法 改正案이 94年12月20日 法律 第4789號로 公布되어 直轄市 名稱이 廣域市로 變更됨에 따라 釜山市에서 條例等의名稱變更을위한條例案 準則이 各 區에 示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區에서도 本 條例를 制定하여 條例·規則·訓令·例規 中에 나타나 있는 모든 直轄市의 名稱을 廣域市로 變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主要骨子를 說明드리겠습니다.

우리 區에서 保有하고 있는 條例 83件, 規則 46件, 訓令 29件, 例規 15件 等 174件의 題名 및 本文內容에 나타나 있는 直轄市의 名稱을 다음과 같이 改正하고자 합니다.

"釜山直轄市 沙下區"는 "釜山廣域市 沙下區"로, "釜山直轄市 沙下區廳長"은 "釜山廣域市 沙下區廳長"으로 變更하고, "釜山直轄市 沙下區議會"는 "釜山廣域市 沙下區 議會"로, "釜山直轄市 沙下區議會 議長"은 "釜山廣域市 沙下區議會 議長"으로 變更하며 "釜山直轄市"는 "釜山廣域市"로 하고 "釜山直轄市長"은 "釜山廣域市長"으로 變更하려는 것입니다.

이 條例의 制定으로 우리 區에서 保有하고 있는 條例·規則·訓令·例規 174件 中 直轄市로 되어 있는 모든 字句가 95年1月1日부터는 廣域市로 一括 名稱이 變更되는 것입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沙下區條例等의名稱變更을위한條例案

(끝에 실음)

○委員長 金信祐 成鍾珹 企劃監査室長 수고했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沈玩澤 釜山直轄市沙下區條例等의名稱變更을위한條例案에 對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다음 페이지 계속)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이 '94. 12. 2 국회 의결되어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보유 시행하고 있는 모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중 부산직할시로 되어 있는 자구를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중 부산직할시의 자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 부산직할시 사하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의장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
- 부산직할시 → 부산광역시
- 부산직할시장 → 부산광역시장

3. 검토의견

'95년에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능을 보강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완화 조정하여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신장하는 한편 기타 현행 자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취지에서 직할시 용어를 광역시로 변경하고 이에 수반되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에 있는 제반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